

감정평가서

감정의뢰인	창원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서동제 (경매4계)
건명	주식회사 마리나개발 소유물건 (2024타경 111660)
감정서번호	PK2409-3-0602호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 전재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우리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프라임감정평가법인(주) 경남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94 올림피아상가 3층 307호

Tel.(055)273-7700 Fax.(055)285-2377



(임야) 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박형국

박형국



프라임감정평가법인(주) 경남지사 지사장 박상순 (또는 인)

감정평가액	금구천사백일십일만육천원정 (₩94,116,000.-)			
의뢰인	창원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서동제	감정평가 목적	경매	
제출처	창원지방법원 경매4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주식회사 마리나개발 (2024타경 111660)	감정평가조건	-	
목록표시근거	귀의뢰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참고사항	-	2024. 09. 12	2024. 09. 11 ~ 2024. 09. 12	2024. 09. 12

감정평가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원)
토지	682	토지	682	138,000	94,116,000
	이	하	여	백	
합계					₩94,116,000

심사
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 감정평가사
박상순

박상순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대상물건 개요

토지	기호	소재지 (김해시)	면적 (㎡)	지목	용도 지역	개별지가 (원/㎡)
	1	상동면 매리 542-1	682	임	계획 관리	35,600

I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매리 542-1번지에 소재하는 부동산(토지)으로서 경매 목적의 평가건입니다.

2. 감정평가 기준

본건 평가에 대한 근거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및 제반 감정평가이론 등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습니다.

3.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의 “시장가치” 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합니다.

4. 기준시점의 결정

본건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2024.09.12일자를 기준시점으로 합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실지조사를 실시한 기간 및 내용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4.09.11. ~ 2024.09.12일에 대상물건을 현장 확인하여 물적동일성 여부 등 실지조사 및 가격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6.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의 조건

해당사항 없습니다.

7. 기타 참고사항

1) 본건 토지상에 식재된 자연생 수목은 거래관행상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바 거래관행에 의거 수목은 토지에 포함평가 하였습니다.

2) 본건 토지 주위는 계절적 영향으로 인하여 잡목 및 잡풀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분묘 소재 여부는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인근 토지와 지적, 경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명확한 위치, 경계확인 은 전문적인 지적 측량을 요하므로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본건 및 인근토지(542-2번지)의 경계지점에 전신주 1기가 소재하고 명확한 위치, 경계확인 은 전문적인 지적 측량을 요하므로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I.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1.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방법 적용 규정

1) 감정평가방법의 관련 규정

관련규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주요 내용
제7조	대상물건별로 개별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일괄, 구분 또는 부분 감정 평가 가능합니다.
제11조	감정평가는 원가방식(원가법, 적산법), 비교방식(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공시지가기준법), 수익방식(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에 따라 평가합니다.
제12조	대상물건별로 주된 방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되, 다른 감정평가방식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제14조	토지의 감정평가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제15조	건물의 감정평가는 원가법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2) 세부 감정평가방법

평가방법	세부 내용
공시지가기준법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補正)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거래사례비교법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事情補正),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원가법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減價修正)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수익환원법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감정평가 방법의 적용

토지는 「동 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을 주된 방법으로 하여 감정평가하되, 「동 규칙」 제12조에 의해 다른 방법(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합니다.

3. 일괄·구분·부분 감정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이유 및 내용
없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V. 토지가액 산정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 산정

1) 개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4조에 의하여 평가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합니다.

2) 비교표준지 선정 및 선정사유

(1) 선정이유

인근지역 내 표준지공시지가 중 당해 토지와 용도지역 및 위치, 형상, 주위환경, 이용상황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아래의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습니다.

(2)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공시기준일 : 2024. 01. 01)

기호	소재지 (김해시)	지목	면적 (㎡)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비고
A	상동면 매리 655	임	106	토지 임야	계획 관리	맹지	가장형 완경사	13,7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시점수정(지가변동률)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당해지역의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시점수정 하였으며, 2024년 08월 이후의 지가변동률은 미고시로 인하여 직전 월의 지가변동률을 연장적용 하였습니다.

(경상남도 김해시, 계획관리지역)

기 간	지가변동률(%)	비 고
2024.01.01 ~ 2024.07.31	1.01779 (1.779%)	2024년 07월까지 누계
2024.08.01 ~ 2024.09.12	(1 + 0.00417 × 43/31)	07월 지가변동률 : 0.417 %
		연장적용
누 계 (2024.01.01 ~ 2024.09.12)	1.02368 (2.368%)	(1 + 0.01779) × (1 + 0.00417 × 43/31) ≒ 1.02368

4) 지역요인 비교

본건 토지는 비교표준지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지역요인은 대등합니다. (1.00)

5) 개별요인 비교

후첨 “개별요인 비교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기호 (1)토지 / 비교표준지 기호 (A)

조 건	항 목	세 항 목	격차율	사 유
가로 조건	접근도로의 상태	접근도로의 배치, 폭, 구조 등	1.00	유사합니다.
	임도의 상태	임도의 배치, 폭, 구조 등		
접근 조건	인근 취락 및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인근 취락과의 접근성	1.05	본건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에서 우세합니다.
		인근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임목의 반출 용이성	임목 반출의 용이성 및 시장 접근성		
환경 조건	자연환경	일조, 통풍 등	1.00	유사합니다.
		토양, 토질의 양부		
획지 조건	규모, 형상 등	면적	0.95	본건은 경사 등에서 열세합니다.
		방위		
		형상		
	고저, 표고 등	고저 (경사지 등)		
		표고		
		경사의 위치 및 굴곡		
	토지이용상황	토지이용상황 등		
임상 등	임상, 조림, 자연림, 수종, 수령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조장의 정도 및 국·도립공원, 보안림, 사방지 지정 등의 규제	1.00	유사합니다.
		기타규제(고압선, 분묘 등)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유사합니다.
		기타		
누 계		1.00 × 1.05 × 1.00 × 0.95 × 1.00 × 1.00	0.998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 그 밖의 요인 보정

(1) 그 밖의 요인 보정의 근거 및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대법원판례[2003다 38207(2004.05.14선고), 2002두 5054(2003.07.25선고)],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토정 30241-36538(1991.12.28)] 등에서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비교표준지와 시가와의 격차가 발생하는 경우 그 격차를 조정하여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이 필요합니다.

(2) 평가사례

기호	소재지 (김해시)	지목	용도 지역	토지단가 (원/㎡)	평가 목적	기준시점	표준지 적용
1	상동면 매리 4**	임	계획관리	157,000	경매	2023.08.30	A
2	상동면 매리 산1**-*	임	계획관리	86,000	경매	2021.12.09	-
3	상동면 매리 산9*	임	계획관리	56,000	경매	2023.11.28	-
4	상동면 매리 6**-**	임	계획관리	103,000	담보	2024.08.08	-
5	상동면 매리 9**-*	임	계획관리	90,000	담보	2023.10.16	-

(3)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수준

기호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가수준(원/㎡)	비 고
1	계획관리	토지임야	@130,000내외	실거래자료 및 현장조사 등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격차율 산정

격차율 산정은 비교표준지가 시가와 격차가 발생하는 경우 그 격차를 조정하여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기 평가사례 중에서 평가사례 기호 (1)를 기준으로 격차율을 산정합니다.

가. 산식

$$\text{격차율} = \frac{\text{평가사례 기준 표준지가격} \times (\text{평가사례} \times \text{지가변동률} \times \text{지역요인비교치} \times \text{개별요인비교치})}{\text{기준시점까지의 표준지가격} \times (\text{공시지가} \times \text{지가변동률})}$$

나. 격차율 산정

가) 평가사례 기호 (1) [매리 4**] / 비교표준지 기호 (A) [매리 655]

구분	기준단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시산가격 (원/㎡)	격차율	
사례 기준 표준지가격	157,000	1.02761	1.00	0.857	138,264	9.859	
가격시점 현재 표준지가격	13,700	1.02368	-	-	14,024		
산정 내역	시점수정	경상남도 김해시 계획관리지역 : 2023.08.30 ~ 2024.09.12					1.02761
	지역요인	비교표준지는 평가사례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바 제반조건은 유사합니다.					1.00
	개별요인	가로	접근	환경	획지	행정	기타
	0.95	0.95	1.00	0.95	1.00	1.00	0.857
비교표준지는 평가사례보다 가로조건(가로의 폭 등), 접근조건(취락과의 접근성 등), 획지조건(경사 등)에서 열세합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평가사례를 기준으로 한 표준지 공시지가의 격차율을 참고하고, 인근의 지가수준, 호가 및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비교표준지 기호	그 밖의 요인 보정치
A	9.85

7) 토지가액 산정 및 결정

본건 기호	표준지 기호	표준지 공시지가 (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A	13,700	1.02368	1.00	0.998	9.85	137,864	138,000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가액 산정

1)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2) 산식

거래사례 가격	x	사정보정	x	시점수정	x	지역요인	x	개별요인	≒	토지가액
------------	---	------	---	------	---	------	---	------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거래사례의 선정 및 그 사유

(1) 인근 유사부동산의 거래사례 [출처 : 감정평가정보체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 사례 기호 1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매리 4**~**				
	구 분	용도지역	지목	면적(㎡)	거래가격(원)	거래시점
	토 지	계획관리	임	410	145,000,000	2023.04.12
토지단가		145,000,000원 / 410㎡ ≙ @353,658원/㎡				

(2) 거래사례의 선정 및 선정사유

상기 거래사례는 평가사례와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용도지역, 지목 등이 유사하여 가치형성 측면에서 합리적이라 판단되므로 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4) 사정보정

거래사례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어 있지 않는 정상적으로 거래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별도의 보정을 하지 않습니다.(1.00)

5) 시점수정(지가변동률)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당해지역의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시점수정 하였으며, 2024년 08월 이후의 지가변동률은 미고시 되어 직전 월의 지가변동률을 연장적용하였습니다.

(경상남도 김해시, 계획관리지역)

사례 기호	기 간	지가변동률(%)	비 고
1	2023.04.12 ~ 2024.09.12	1.03140 (3.14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 지역요인 비교

본건 토지는 거래사례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지역요인은 대등합니다.(1.00)

7) 개별요인 비교

후첨 “개별요인 비교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기호 (1)토지 / 거래사례 기호 (1)

조 건	항 목	세 항 목	격차율	사 유
가로 조건	접근도로의 상태	접근도로의 배치, 폭, 구조 등	0.65	본건은 임도의 배치 등에서 열세합니다.
	임도의 상태	임도의 배치, 폭, 구조 등		
접근 조건	인근 취락 및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인근 취락과의 접근성	0.80	본건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에서 열세합니다.
		인근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임목의 반출 용이성	임목 반출의 용이성 및 시장 접근성		
환경 조건	자연환경	일조, 통풍 등	1.00	유사합니다.
		토양, 토질의 양부		
획지 조건	규모, 형상 등	면적	0.75	본건은 경사 등에서 열세합니다.
		방위		
		형상		
	고저, 표고 등	고저 (경사지 등)		
		표고		
		경사의 위치 및 굴곡		
	토지이용상황	토지이용상황 등		
임상 등	임상, 조림, 자연림, 수종, 수령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조장의 정도 및 국·도립공원, 보안림, 사방지 지정 등의 규제	1.03	거래사례 일부는 접도구역에 저촉되므로 본건이 우세합니다.
		기타규제(고압선, 분묘 등)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유사합니다.
		기타		
누 계		$0.65 \times 0.80 \times 1.00 \times 0.75 \times 1.03 \times 1.00$	0.402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8) 토지가액 산정 및 결정

기호	사례 기호	거래사례 (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1	353,658	1.00	1.03140	1.00	0.402	146,635	147,000

3. 시산가격 조정 및 토지가액 결정

1) 시산단가

기호	공시지가기준법 (원/㎡)	거래사례비교법 (원/㎡)	비고
1	138,000	147,000	-

2) 토지가액 결정

상기 시산가격에서와 같이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가격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가격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선정된 거래사례의 가격은 사정이 개입되지 아니한 정상적인 거래가격인 것으로 판단되고, 각 평가방법에서 적용된 요인비교 및 가격 보정작업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평가목적과 상기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부동산시장 경기 및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규준성 있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으로 결정하였으며 평가목적상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호	면적(㎡)	공시지가기준법(원/㎡)	감정평가액(원)
1	682	138,000	94,116,000

【 이 하 여 백 】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또는 용도	용도지역 또는 구조	면적 (㎡)		감정평가액		비고
					공부	사정	단가(원/㎡)	금액(원)	
1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매리	542-1	임야	계획관리지역	682	682	138,000	94,116,000	
합계				< 이 하 여 백 >				₩94,116,000.-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4. 인접 도로상태 | 7. 공부와의 차이 |
| 2. 교통상황 | 5. 도시계획관계 및 공법상제한상태 | 8. 임대관계 |
| 3. 형태 및 이용상황 | 6. 제시목록외의 물건 | 9. 기타 참고사항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남 김해시 상동면 매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소규모 공장, 농경지, 토지임야, 자연림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황

본건은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로 이용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맹지입니다.

5. 도시계획관계 및 공법상제한상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입니다.

6. 제시목록외의 물건

없습니다.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4. 인접 도로상태 | 7. 공부와의 차이 |
| 2. 교통 상황 | 5. 도시계획관계 및 공법상제한상태 | 8. 임대관계 |
| 3. 형태 및 이용상황 | 6. 제시목록외의 물건 | 9. 기타 참고사항 |

7.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8.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9. 기타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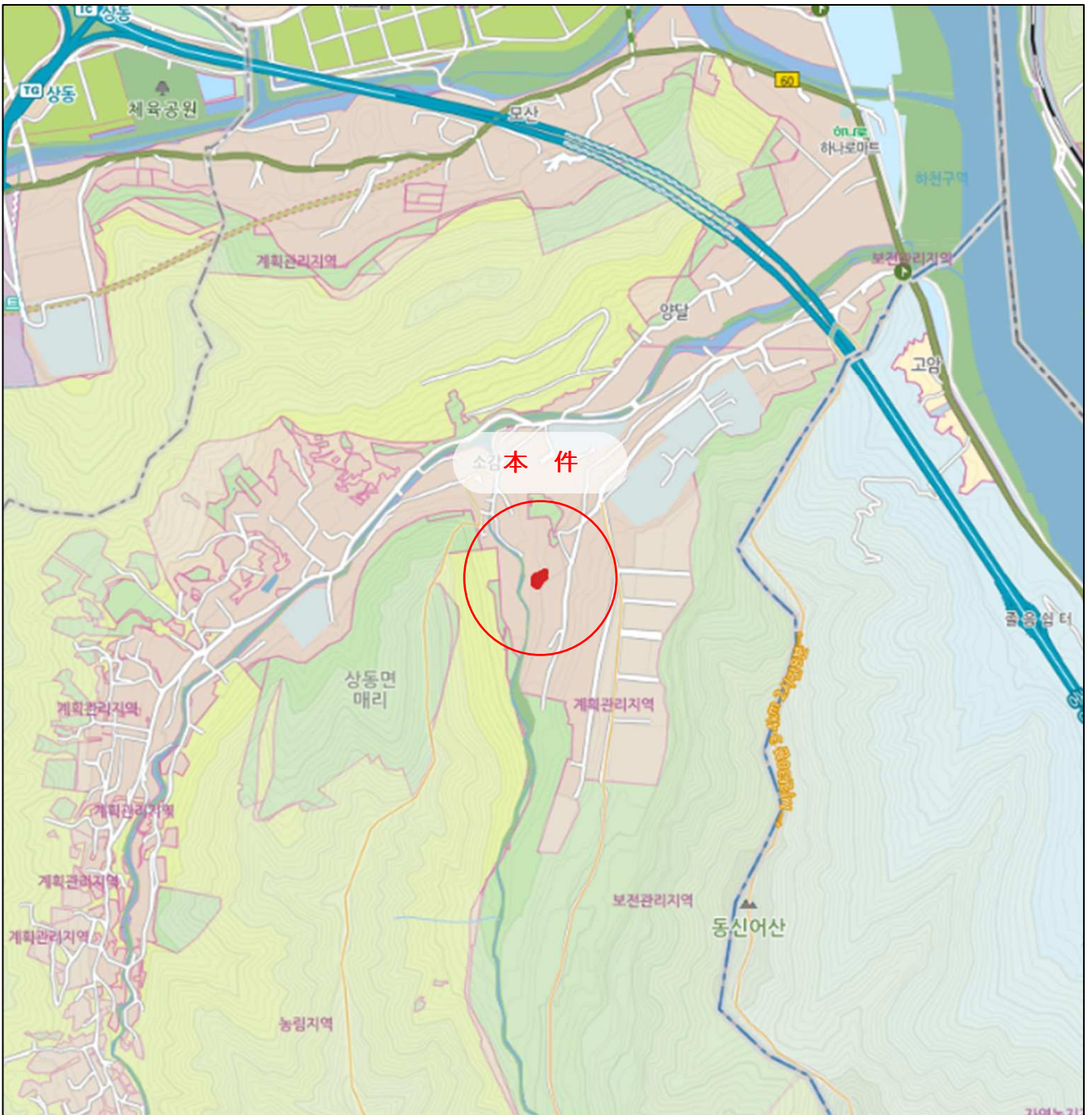
본건 토지 주위는 계절적 영향으로 인하여 잡목 및 잡풀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분묘 소재 여부는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역 위치도

4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매리 542-1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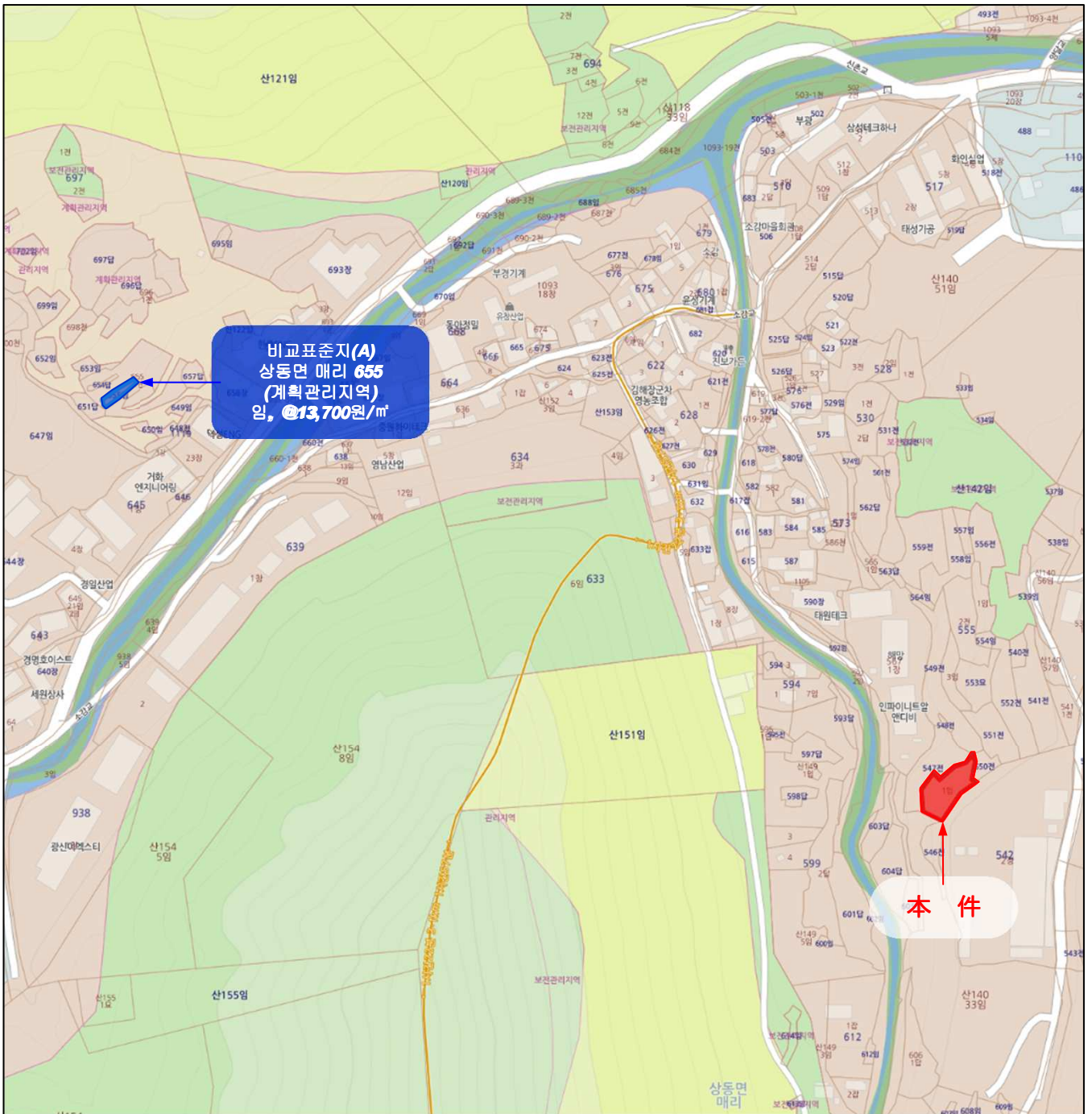


상세위치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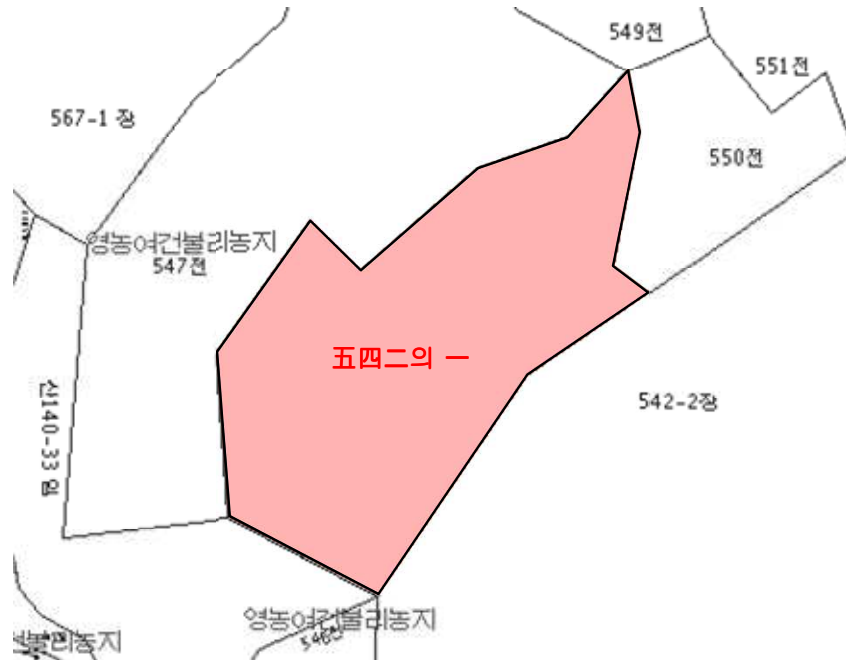
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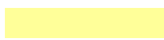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매리 542-1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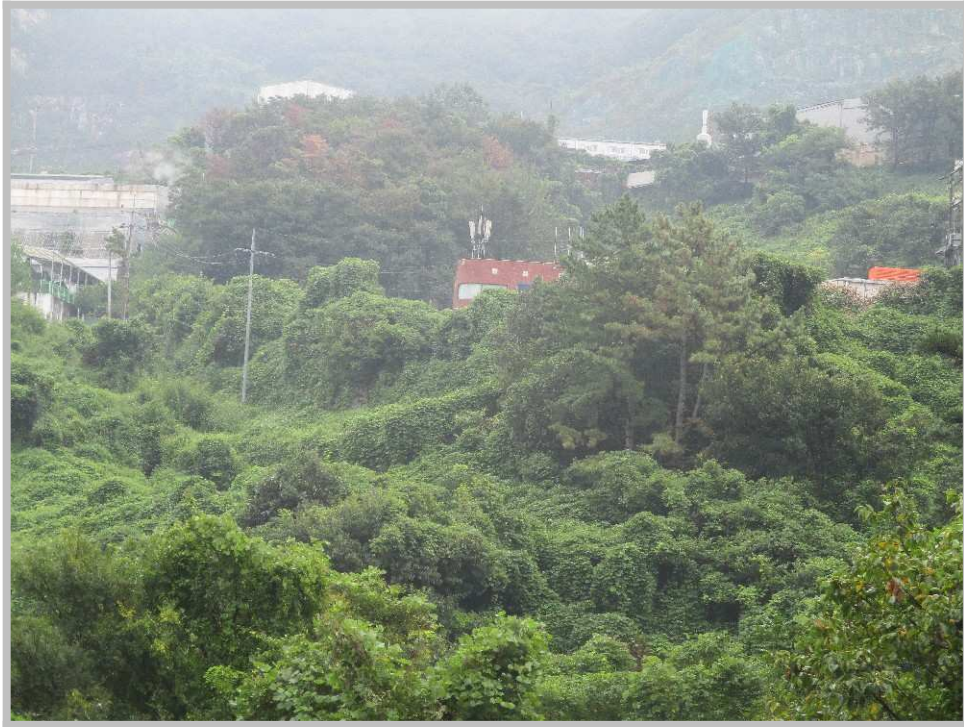
지 적 도

4 Scale 1/600



범 례		평가대상토지		용도지역구분선		평가건물3층이상
		도로선		평가건물 1층		평가제외건물
		도시계획선		평가건물 2층		제시외건물

사 진 용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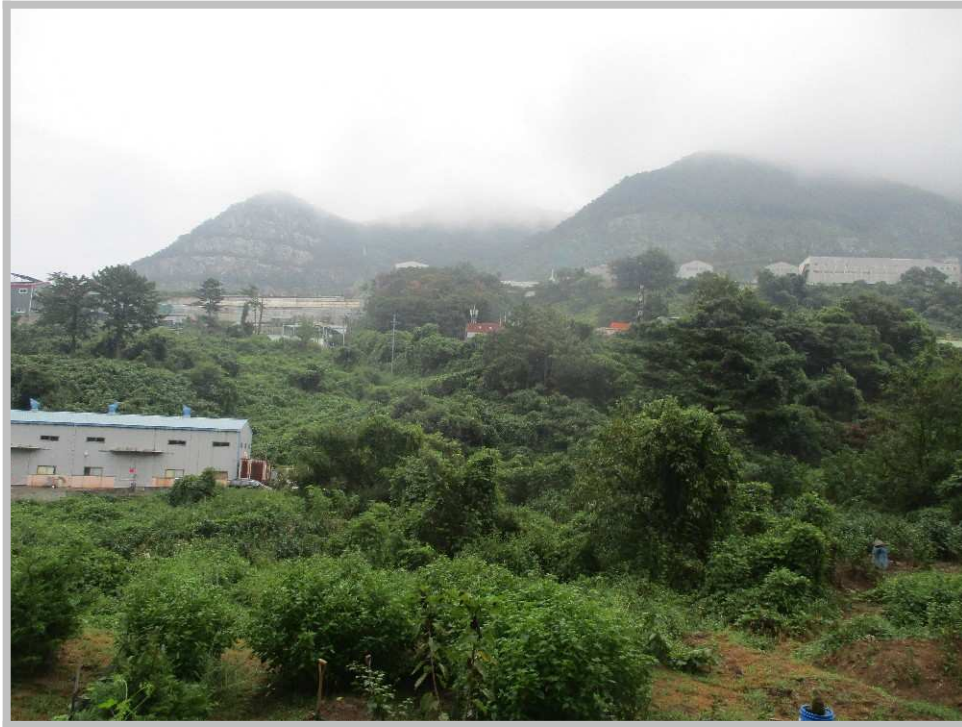


[본건전경]



[본건전경]

사 진 용 지



[주위환경]



[주위환경]

프 라 임 감 정 평 가 법 인 (주)

(51515) 경상남도 창원시 용지로 94 올림피아상가 3층 307호 Tel. (055)273-7700 Fax. (055)285-2377

문서번호: PK2409-3-0602
시행일자: 2024. 09. 13
수 신: 창원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서동제
참 조: 경매4계
제 목: 감 정 평 가 회 보

선결			지		
접	일자 시간		시		
수	번호		결		
처 리 과			재		
담 당 자			공		
			람		

1. 우리 프라임감정평가법인(주)의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오며,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문서 2024. 09. 05.자 귀 제 『2024타경 111660』 호로 의뢰하신 『주식회사 마 리나개발 소유물건(2024타경 111660)』 건에 대하여 불임과 같이 감정평가서를 회보하오니 업무에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감 정 평 가 서 1 부
2. 청 구 서 1 부
3. 온라인 전송 완료 끝.

프라임감정평가법인(주) 경남지사장



청 구 서

감정평가서번호 : PK2409-3-0602호

창원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서동제 귀하

一 金 사 십 오 만 구 천 팔 백 원 整 (₩459,800.-)

2024. 09. 05자 귀 제 『 2024타경 111660 』 호로 의뢰하신 『 주식회사 마리나개발 소유물건 (2024타경 111660) 』 건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되었으므로 상기 금액을 ‘감정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에 의거 청구하오니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내역-

과 목	금 액	비 고	
(가) 평가 수수료	298,231	※ 평가수수료	
(나) 실비	여비	115,600	200,000 +
	토지조사비	-	(94,116,000 - 50,000,000)
	물건조사비	-	
	공부발급비	1,090	x 11/10,000 = ₩248,527
	기타실비	4,000	248,527 x 0.8 = ₩198,821
특별용역비	-		
소 계	120,690	1.5배분: 198,821 x 1.5 = ₩298,231	
합 계 (가+나, 천원미만 절사함)	₩418,000		
부가가치세	₩41,800		
총 계	₩459,800		
기납부착수금	-		
정산청구액	₩459,800		

★ 계좌번호 ★

◆ 경남은행 가음정동지점 548-07-0050194 프라임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
◆ 농협은행 경남영업부 301-0114-2282-11 프라임감정평가법인(주)경남지사

2024년 09월 13일

프라임감정평가법인(주) 경남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94 올림피아상가 3층 307호

Tel. (055)273-7700 Fax. (055)285-2377

[공급자(사업자)등록번호 : 609-85-39522]

